

대학원상별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2021. 9. 1. 제정

주무부서 : 대학원교육지원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제67조의 3(징계)’에 의거 대학원상별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학원위원회 의결 전 징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위원회 출석(서면진술) 및 관련증거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수 및 직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교육부원장
2. 대학원 연구부원장
3. 대상자 소속 학과의 학부 단과대학장
4. 대상자 소속 학과장 (전공인 경우 전공주임교수)
5.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법학전공교수

단, 사안에 따라 대학원장은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학원 교육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징계가 발의될 시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9.1.)

이 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